

영국의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 법안

I. 들어가며

동물 학대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어 국민의 공분을 사는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만, 특히 요 근래에 들어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과 관련된 이슈가 자주 보도되고 있다. 동물에게 공연을 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사용되는 현장이나, 동물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장이 카메라에 찍혀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경우가 최근 자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원숭이가 학생으로 등장하는 공연에서의 충격적 실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인 동물보호단체들의 비난을 초래하였고¹⁾, 국제동물보호단체(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ADI)는 홈페이지의 ‘오락 산업의 동물(Animals in entertainment)’이라는 카테고리에서 한국 공연 업체의 원숭이 학대 실태를 고발

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동물 보유 시설은 공원 시설로,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동물원은 박물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 각 보유 동물에 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³⁾ 그리고 동물보호법에 동물학대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공연 훈련장 안에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훈련 과정에서의 학대는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으므로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또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에 대한 적정한 사육과 관리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연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사육과 관리의 적정 수준을 담보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즉, 카메라를 몰래 휴대하고 들어가 처참한 사육 실태나 학대 현장의 영상을 찍어 나오지 않는 이상 해당 이슈를 쟁점화 할 방법도 증명할 방법도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 보호에 있어 선진적인

- 1) 한겨례, 2014.2.14. 보도(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4230.html); 프레시안 2014.2.17. 보도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4294>). 네 발을 모두 이용해 걷는 원숭이에게 직립보행을 훈련시키기 위해 앞발을 묶고 뒷발로 걷게 하는 훈련 모습이나, 좁은 우리에 여러 마리의 원숭이가 갇혀 있는 모습 등이 폭로 영상에 찍혀 있었다. 원숭이의 발병과 폐사가 잦은 점도 문제가 되었다.
- 2) http://www.ad-international.org/animals_in_entertainment/go.php?id=3517 와 <http://www.ad-international.org/con-servation/go.php?id=3521&ssi=0> 참조.
- 3) MBC 뉴스, 2014.3.17. 보도(http://imnews.imbc.com/replay/2014/nw1800/article/3431346_13479.html).

입법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는 최근 야생동물을 서커스에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서커스는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이 아니며, 야생동물을 서커스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시키는 것은 동물의 자연스러운 생활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에서의 이러한 움직임을 소개하고자 한다.

II. 영국의 동물 보호 동향과 야생동물 서커스 관련 현행법

1. 영국의 동물 보호 동향

영국의 서커스 산업은 거의 200년 동안 계속되어 왔는데,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이국적인 야생동물을 잠깐이라도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서커스였기 때문에, 서커스에서 야생동물 공연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오늘날에는 동물

원 · 교육 과정 · 자연 다큐멘터리 등을 통해서 야생동물과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자연 환경에 대해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졌다.⁴⁾ 따라서 서커스에서 야생동물 공연을 계속해야 할 공익적 이유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영국은 일찍이 동물학대에 대한 관심과 법 제정에서 앞서 왔던 나라이다. 1822년에 만들어진 마틴법(Martin's Act)⁵⁾는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첫 제정법이었고, 영국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동물복지에 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⁶⁾

이런 상황에서 서커스에서의 야생동물 학대와 심각한 관리상의 문제가 반복해서 폭로됨에 따라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oyal society for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 RSPCA)⁷⁾나 국제동물보호단체(ADI)와 같은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서커스에서의 야생동물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다. 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이다.⁸⁾

- 4) 1822년 영국의 정치가인 리처드 마틴이 발의한 'Cruel Treatment of Cattle Act 1822'(원래의 법 명칭은 'An Act to prevent the cruel and improper Treatment of Cattle')는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보통 Martin's Act 라고 불린다(http://en.wikipedia.org/wiki/Cruel_Treatment_of_Cattle_Act_1822 참조).
- 5)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의 '동물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명칭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어 생명존중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경향신문 2013.10.1. 보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cle_id=201310012233335&code=940701).
- 6) 전반적인 문제점의 지적에 대해서는 캐나다 최대의 야생동물 보호단체인 'Zoocheck Canada'를 설립한 Rob Laidlaw의 저서 「On Parade: The Hidden World of Animals in Entertainment」를 참조하였다.
- 7) 마크 베코프/윤성호 옮김, 동물 권리 선언, 미래의 창, 2011, 222-223쪽.
- 8) 코끼리들은 평생 72~96%의 시간을 사슬에 묶여 지내고, 사자나 호랑이들은 95% 이상의 시간을 비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

야생동물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첫 번째로 야생동물을 서비스 공연에 내보내기 위해 훈련을 시킬 때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의 강압성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조련사들은 이를 부인하기도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들에 의해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되거나 전직 조련사의 양심선언 등을 통해서 알려진 실체는 채찍, 꽉 끼는 목줄, 재갈, 전기 충격기, 끝에 갈고리가 붙은 막대 등 잔인한 도구들이 훈련에 동원되는 것으로 드러났다.⁹⁾ 이는 동물의 본성에 어울리지 않는 단순·반복적인 훈련에 동물을 억지로 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게다가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아예 동물의 이빨이나 발톱 등을 뽑아버리거나 날아가지 못하도록 날개를 자르는 경우도 자주 발견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서비스에 동원되는 동물들이 공연이 없는 시간에는 장시간 우리에 감금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있을지도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동물이 몸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좁은 우리에 동물을 넣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사 우리에 넣어두지 않더라도 아주 짧은 줄에 매어 놓아 행동 반

경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상황은 이동 시에는 더욱 악화되어 동물들은 물과 음식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채 좁은 우리에 갇혀 대륙에서 대륙으로, 나라에서 나라로 장시간의 이동을 견뎌야한다.¹¹⁾

세 번째 문제는 서비스에 동원되는 동물들에 대한 보살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좁은 우리에 갇혀 있고,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 채 혹사당하며, 훈련 습득 과정에서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에 노출되는 동물들은 질병에 시달리는 일이 찾고, 그에 따라 폐사율도 높다.¹²⁾ 그리고 이러한 고통은 보통 동물이 죽을 때까지 이어진다. 영국에서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서비스 코끼리 Anne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¹³⁾ Anne은 이미 60살이 넘은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질병을 앓고 있는 와중에 끊임없이 폭력과 상해에 시달리며 공연을 이어가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동물의 종류에 따라 새끼 때는 서비스 공연에 이용이 가능하지만, 다 자란 수컷 침팬지나 수컷 곰처럼 커다란

으며, 말들은 98%의 시간을 묶여 지낸다고 한다(마크 베코프/윤성호 옮김, 동물 권리 선언, 미래의 창, 2011, 201쪽).

9) 캐서린 그랜트/황성원 옮김,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이후, 2012, 96쪽.

10) 캐서린 그랜트/황성원 옮김,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지인가?, 이후, 2012, 97-98쪽 참조.

11) Anne의 사례는 국제 동물 보호 단체(ADI)에 의해 2011년 학대 동영상이 공개되어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이로 인해 서비스 운영자 Bobby Roberts도 형사 처벌되었다(<http://www.bbc.com/news/uk-england-20464605>). 이 사건은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http://www.sbs.co.kr/news/newsEndPage.do?news_id=N_1000885330 등).

12) 한화로 환산하면 약 870만원 정도.

13) 한국일보, 2011.6.22. 보도(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106/h201106221639182_2450.htm).

몸집과 야생성을 인간이 제압하기 힘든 경우에는 일 년 내내 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 번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남에 따라 더 이상 단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동물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야생동물 서커스와 관련된 현행 법령들

이동 서커스의 야생동물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의 법령들은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다.

Welfare of Wild Animals in Travelling Circuses (England) Regulations 2012

- 서커스 운영자가 야생동물을 공연에 이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함

Animal Welfare Act 2006

- 동물 사육 기준과 동물 학대 금지 등을 규정
- 동물 학대를 6개월 이하의 구금 또는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s) Act 1925

- 동물을 조련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지방 자치 단체에 등록하도록 함
-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이동 서커스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부속법령(Welfare of Wild Animals in Travelling Circuses (England) Regulations 2012)

이 법은 ‘야생동물 서커스 이용 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의 기간 동안 서커스의 야생동물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속법령으로,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 2006)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여기에서는 영국에서 이동 서커스의 운영자가 야생동물을 서커스 공연에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서커스는 엄격한 복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반적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야생동물을 이용하는 이동 서커스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엄격한 복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각각의 동물에 대한 사육과 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본 법은 동물들에 대한 정기적인 수의사의 검사 의무와 각각의 동물을 위한 은퇴 계획 수립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동반하여 이동 서커스를 운영한 경우 최대 6개월의 구금 또는 5,000파운드¹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금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1997년 20개가 넘었던 영국의 동물 서커스단은 2011년 3개로 줄어

14) http://www.ad-international.org/animals_in_entertainment/go.php?id=2780&ssi=10 참조.

들었다.¹⁵⁾ 그리고 영국에서 가장 큰 동물 서커스인 ‘Great British Circus’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후 서커스 소유의 동물들을 매도함에 따라¹⁶⁾ 현재 ‘이동 서커스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부속법령(The Welfare of Wild Animals in Travelling Circuses (England) Regulations 2012)’의 규제를 받는 서커스는 Circus Mondao¹⁷⁾와 Peter Jolly’s Circus¹⁸⁾ 2개로 줄어

들었다.

2) 동물복지법(The Animal Welfare Act 2006)

이 법은 ‘동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이동 서커스에 이용되는 모든 야생동물’도 이 법의 동물에 포함된다.

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cence-issued-to-circus-mondao-for-2014>.

16)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cence-issued-to-peter-jollys-circus-for-2014>.

17) 한화로 환산하면 약 3470만 원 정도.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구금 6개월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의 징역 1년이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실상 동물 학대 행위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벌금 액수가 영국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물보호법 제8조는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 적용되지만, 영국 The Animal Welfare Act상의 위 처벌 규정은 단순히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이 매우 관대함을 알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한화로 환산하면 약 170만 원 정도.

‘동물복지법’은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동물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에 따르면 동물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은 동물 사육의 5대 복지 기준을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다. 5대 기준은 적절한 환경, 적절한 음식, 정상적인 행동 양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 다른 동물과 함께 또는 따로 떨어져서 살 수 있을 것,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될 것이다. 동물의 복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구금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그리고 본 법은 동물에게 불필요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0,000파운드¹⁹⁾ 이하 혹은 6개월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구금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다.

3) 공연동물법(The Performing Animals (Regulations) Act 1925)

본 법은 동물을 조련하거나 전시하는 사람에게 관련된 동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서류

로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본 법과 관련된 장소에 대한 수색권을 부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을 전시하거나 조련하는 경우 1,000파운드²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III.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 법안

1. 의회와 정부의 입장²¹⁾

본 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야생동물을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라는 반발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 국민과 하원 의원들은 비록 포획된 야생동물이라 하여도 야생의 본능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고유한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야생동물의 본능과 고유한 가치를 고려할 때 그들을 오로지 서비스 공연을 위해 이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야생성에 걸맞지 않으며 야생동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또한 흔히 이동 서비스들이 내세우는 교육적·보존적·학문적·경제적 이익은 야생동물의

19)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의회 보고서,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28862/8538.pdf 중 “Section 2-THE ARGUMENTS AGAINST THE USE OF WILD ANIMALS INTRAVELLING CIRCUSES” 참조.

20) 서비스에서 동물과 광대를 제외하고도 세계적인 서비스 공연으로 자리매김한 ‘태양의 서비스’가 그 좋은 예이다(강현직/강혁, 동물과 광대가 없는 서비스, 가산출판사, 2009, 19쪽 이하 참조).

21) 제임스 카메론 총리는 동물 보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yes, we are going to do it.”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http://www.ecorazzi.com/2014/04/10/englands-prime-minister-says-he-will-ban-wild-animals-from-circuses/>).

이용을 정당화 시키지 못하며 야생동물로서의 자연스러운 행태를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문제 점도 지적되었다. 또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야생동물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많은 공연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대중의 즐거움을 위해 야생동물 서비스를 존속시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²²⁾

만약에 포획된 야생동물이 멸종 위기종이거나 멸종 위기에 놓인 서식지에서 왔다면, 그런 야생동물을 인간의 즐거움이나 구경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 영국 정부는 이동 서비스에서 야생동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이동 서비스에서의 공연에 야생동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야생동물의 본능을 고려할 때 그들은 이동 서비스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본능을 충족시키는 행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 받는다
- 인간에게는 야생동물이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에게 내재한 야생성을 존중하고 그들을 대할 때 야생성을 고려해야 한다
- 야생동물을 이용한 서비스 공연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나 보존, 자연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국민적 지지와 하원 의원들의 결의, 정부의 공식 견해까지 발표되어 법제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완료되었다.

2. 법안 논의 과정

2011년 6월 23일 영국 하원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 금지를 규정한 것처럼 영국에서도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 그리고 정부에 2012년 3월 1일까지 영국 내에서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의 초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정부는 야생동물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겠다는 목표에는 동의하면서도 법을 제정하는 데에는 시일이 많이 소요되므로, 우선 현재 영국 내의 서비스에서 공연에 이용되고 있는 야생동물들에 대한 관리와 점검을 면허 발급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에 근거한 하위법령(Statutory Instrument)이 만들어졌으며²³⁾, 현재 영국 내 이동 서비스의 야생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촉진하는 ‘이동 서비스 야생동물의 복지를 위한 부속법령이 2013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2) <http://www.parliament.uk/about/how/occasions/stateopening/>.

23) <http://www.parliament.uk/briefing-papers/SN06870.pdf>.

현재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 법안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나, 2014년 4월 9일 국제 동물 보호 단체(ADI)의 대표 등이 제임스 카메론 영국 총리를 만나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한 자리에서 총리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함으로써²⁴⁾ 법안이 올해 안에 무사히 통과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다.

영국은 보통 올해 봄에서 이듬해 봄으로 이어지는 의회의 회기가 시작할 때에 여왕이 의회에 출석하여 당 회기동안 정부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법안들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의회의 협조를 당부하는 국정 연설(Queen's Speech) 시간을 갖는다. 2014-15년 의회 회기를 여는 여왕의 국정 연설은 2014년 6월 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²⁵⁾,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은 국정 연설의 내용 중 '작년부터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²⁶⁾

따라서 2014년 4월 총리가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6월 4일 여왕의 국정 연설에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을 포함시키면, 본 법안의 통과가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상황이다.

3. 법안의 내용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 법안은 영국 내에서 야생동물을 서비스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²⁷⁾ 법안에 따르면 야생동물이란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웨일스(Great Britain)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육되지 않는 종류의 척추 동물을 의미한다.²⁸⁾ 이러한 정의는 '동물원 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에서 쓰이는 야생동물의 정의와 유사하다.²⁹⁾ 이동 서비스에서 야생동물을 공연이나 전시에 사용하면 해당 서비스의 운영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³⁰⁾ 이

24) 법 제1조 제1항.

25) 법 제1조 제5항.

26) 동물원 허가법(Zoo Licensing Act 1981) 제21조 정의 제1항 "... '야생동물'이란 잉글랜드 · 스코틀랜드 · 웨일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육 되지 않는 동물을 의미한다."(<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1/37/crossheading/supplemental>).

27) 법 제1조 제2항.

28) 현재 영국의 벌금 기준은 다음과 같다.

Level on the scale Amount of fine	
level 1	£200
level 2	£500
level 3	£1,000
level 4	£2,500
level 5	£5,000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1/53/section/17> 참조).

29) 법 제1조 제3항.

러한 금지를 어기고 야생동물을 이용하면 약식 재판에 의해 벌금 기준 5를 넘지 않는(현재 5,000 파운드)³¹⁾ 벌금에 처해진다.³²⁾

현재의 법안에 따르면, 이 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2015년 12월 1일까지 유예 기간으로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이동 서비스들은 동물들을 제외한 새로운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동 서비스가 보유한 야생동물들에게 서비스에서의 삶을 대체하는 보살핌을 주선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조사관과 조사관의 강제 집행에 대한 사항은 법 제2조에 의해 부칙(Schedule - Enforcement Powers)에 따로 규정되어 있다. 부칙에 따르면 행정부의 장관은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의 목적을 위해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³³⁾ 이 조사관은 서비스에서 야생동물을 이용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장소 수색 권한'을 가지게 된다.³⁴⁾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 그 자체가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 사실의 증명을 위해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는 장소에 대한 수색 권한을 조사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부칙의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쓰이는 장소에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³⁵⁾ 주거에 대해서는 일반 장소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 조사관은 수색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수색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야 한다.³⁶⁾ 해당 장소에 대한 수색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영장의 사본을 준비하여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영장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³⁷⁾ 만약, 조사관이 수색하고자 하는 장소에 현재 아무도 없는 경우, 영장의 사본을 눈에 잘 띠는 곳에 남겨놓고 와야 한다.³⁸⁾

30) 부칙 제1조.

현재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14조에는 동물보호감시원의 지정과 직무에 대해, 제15조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자격과 위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에서는 야생생물 보호원, 제61조에서는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동물보호감시원이나 야생생물 보호원은 교육 및 지도, 계몽 등에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어 영국에서와 같이 강제적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31) 부칙 제2조.

32) 부칙 제3조.

33) 부칙 제4조 제1항.

34) 부칙 제4조 제2항.

35) 부칙 제4조 제3항.

36) 부칙 제5조.

37) 부칙 제6조.

38) 부칙 제7조 (a)~(i).

수색 권한은 일반적으로 적정한 시간에 행사되어야 하지만, 적정한 시간에 들어가서는 수색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드시 적정한 시간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³⁹⁾ 조사관이 수색 권한을 행사할 때에, 필요에 따라 강제력을 사용하거나, 2인 이하의 타인을 동반하고 들어가거나, 필요한 장비나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⁴⁰⁾

수색 권한을 행사하는 조사관은 해당 장소의 수색,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동물이나 물건들에 대한 조사·측정·검사, 해당 장소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질문 또는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만약 필요하다면,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동물이나 물건에 대한 사진 촬영과 동영상 녹화도 할 수 있고,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서류나 기록에 대한 조사나 복사·발췌도 할 수 있다.⁴¹⁾

만약, 조사관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면,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유체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또 해당 장소에서 발견된 물건 중 범죄의 증거라고 의심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할 수도 있다.⁴²⁾

이러한 조사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관이 해당 조사관의 선의와 합리성을 인정할 때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조사관을 보좌하여 함께 수색 권한을 행사한 2인 이하의 사람도 마찬가지이다.⁴³⁾

‘야생동물 서비스 이용 금지법’에 의하면, 야생동물을 서비스에 이용하는 행위가 바로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므로, 이에 대한 증거를 찾으려는 조사관의 수색 권한 행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자는 벌금 기준 5(현재 5,000 파운드)를 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 법은 이동 서비스(Travelling Circuses)에도 적용되므로, 고정된 건조물이 아닌 운송수단이나 텐트 등의 이동식 구조물에 대해서도 준용된다.

IV. 마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동물원이나 동물 공연에 대해 관리·규제할 수 있는 법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해결하고자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동물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39) 부칙 제7조 (j)~(k).

40) 부칙 제11조.

41) 부칙 제10조.

42) 부칙 제12조.

43) 정세균 의원실/이원우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 대한민국 국회, 2013, 5쪽 이하 참조; 뉴시스 2013. 10.12. 보도(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_20131012_0012428898&cID=10301&pID=10300).

44) 정세균 의원실/이원우 의원실/국회입법조사처,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보고서,

냈으며⁴⁴⁾, 2013년 국회에 ‘동물원법’과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발의된 상태이다.⁴⁵⁾ 이 중 장하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원법’의 입법안은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인위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가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과천 서울대공원이 동물이 등장하는 공연을 전면적으로 없애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되던 돌고래 ‘제돌이’가 불법 포획된 사실이 문제가 되어,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동물에게 인위적인 행동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이다.⁴⁶⁾ 그러나 서울대공원의 이러한 결단은 사회적 큰 물결을 만들지 못하고, 일개 동물원 차원의 각성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따라서 우리가 무심코 보고 즐기는 동물 공연을 위해 많은 동물들이 학대당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에 본고는 2013년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 장관이 국회에 보낸 입법 보고서에 소개되어 있는 야생동물 서커스 이용 금지법(Wild Animals in Circuses)의 법안에 대해 소개하였다.

동물원의 설립과 운영, 동물원에서의 동물 공연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에 동물 보호 선진국인 영국의 사례가 좋은 입법례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정 소영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인턴)

대한민국 국회, 2013, 5쪽 이하 참조; 뉴시스 2013. 10.12. 보도(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1012_0012428898&cID=10301&pID=10300).

45) 동물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규제·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물원법’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의 대표 발의로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아시아경제 2014.1.7. 보도).

46) 중앙일보 2014.1.7. 보도(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3573878&cloc=olink|article|default).

참고문헌

장현직/강현, 동물과 광대가 없는 서커스, 가산출판사, 2009.
정세균, 이원욱 의원, 동물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 2013.
캐서린 그랜트/황성원 옮김, 동물권, 인간의 이기심은 어디까
지인가?, 이후, 2012.

마크 베코프/윤성호 옮김, 동물 권리 선언, 미래의 창, 2011.

영국 환경식품농촌부 의회 보고서 「Wild Animals in Cir-
cuses」

Rob Laidlaw, On Parade: The Hidden World of Animals in
Entertainment, Fitzhenry & Whiteside, 2010.